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5. 25 선고 2021가단15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5. 11.

판 결 선 고 2022. 5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경남 창원군 D 대 54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18, 19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
부분 15㎡ 지상 철골기둥 슬레이트지붕 창고를 철거하고, 위 ㄹ 부분 15㎡를 인도하고,

나. 경남 창원군 E 대 47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20, 21, 17, 6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
부분 91㎡ 지상 철골기둥 슬레이트지붕 창고를 철거하고, 위 ㄴ 부분 91㎡를 인도하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경남 창원군 F 대 542㎡ 및 경남 창원군 E 대 479㎡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가 위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의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제해성

별지